#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18 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이만희·구자근·서천호

엄태영 · 강선영 · 최은석

이성권 · 서명옥 · 김기웅

이달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,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호 전단 중 "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."을 "사업"으 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.

제43조제2항제4호 전단 중 "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."을 "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)	제23조(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)
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	
외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	4
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	
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	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	
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「재난	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9조	
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	
시행하는 <u>사업으로서 행정안</u>	<u>사업</u> <후단 삭제>
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	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	
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. 이	
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	
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	
요청하여야 한다.	
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	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
상) ① (생 략)	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②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. 이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, _ , .
4
<u>사업</u> <u>&lt;후단 삭제&gt;</u>